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 정기연 인

여수시 조례 제2043호

붙임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43호

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효"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효행"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.
3. "부모 등" 이란 「민법」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.
4. "경로"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.
5. "효문화" 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, 문학, 미술, 음악, 연극, 영화,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.
6. "3대 이상 가정" 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(이하 "효도대상자" 라 한다)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효행 사업 지원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
2.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

3.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
4.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·발굴·관리 사업
5.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·축제·이벤트·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
6.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민간단체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,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2.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
3.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
4.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제6조(사업의 평가)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.

제7조(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) ① 시장은 "법"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,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효행자 표창)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효행 지원 등)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

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